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정화조 보호벽에 관하여 질의

민원내용보기

별표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제 24조 제3항 관련)의 12항 관련입니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서

질의)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하부 또는 건축물, 시설물의 하중등이 발생하는 곳에 FRP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의 설계. 시공시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6호)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차 답변일 2011.12.31. 22:33:09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건축법 제48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에 따르면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기존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나,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부재의 구조내력을 5%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지 여부, 정화조시설과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을 적용 여부 등을 검토 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답변일 2012.01.27. 14:10:04

**처리결과
(2차 답변내용)**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6호, '09.12.31, 일부개정]은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소규모건축물의 경우에도 동 규칙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